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속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기간 규정〉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88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속 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 액지급청구권의 행사기간 규정	2
2.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1. 상속 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
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기간 규정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개정안
第999條(相續回復請求權) ① (생략)	第999條(相續回復請求權) ① (헌법과 같음)
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나. 현행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및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1014조) 관련 규정 및 판례

현행 「민법」 제999조¹⁾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항).

한편, 「민법」 제1014조²⁾에서는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그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을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의 일종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³⁾,

1)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⁴⁾,

“침해행위가 있는 날”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이 아닌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로 해석하고 있음⁵⁾.

다. 검토의견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가액반환 방식을 통해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인지청구 등을 통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⁶⁾.

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2005가합36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89423 판결, 대법원 2007. 1. 12. 2006다65927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주요 내용>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경우,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방식 중 '원물반환의 방식'을 차단하여 그 분할·처분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을 존중하는 한편,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는 '가액반환의 방식'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공동상속인, 제3취득자,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 수행한다. (...중간 생략...)

이때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있는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간 생략...)

결국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기간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

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따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제999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므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999조가 아닌 제1014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법제적 측면에서 더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을 반영하여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구체적인 행사조건 및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정방식 및 내용 등은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보장 취지, 상속관계의 조속한 안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